

광주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698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현, 최정윤, 이원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국현아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13.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20가단51254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2019. 7. 12.자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용인시 처인구 I(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로 이 사건 소장을 집행관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20. 5. 14. 이 사건 주소지에서 동거인 ‘J’이 이 사건 소장을 수령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소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발송송달 방법으로 2020. 6. 30. 송달간주 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20. 7. 4. 피고에게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는데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20. 8. 4. 공시송달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였다(공시송달 효력발생일 2020. 8. 19.).

4) 피고는 2020. 12. 9. 은행으로부터 압류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서야 제1심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같은 날 이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5) 한편, 피고의 아버지인 C은 2021. 2. 1. 원고 직원과 통화하면서 J이 사위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와 동거하고 있고, 결혼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고, 피고는 원고 직원의 “그때 그 5월예요? 제일 처음에 소장 받았을 때요?” 라는 질문에 “예, 그러니까 그건 받았어요. 제가. 전 그거 첫 번째 거”라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나. 관련법리

1)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고(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분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3)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속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이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누2363 판결,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주소에서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J과 사실상 생활을 같이하는 자로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볼 것이므로, J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은 피고에 대한 보충송달로써 유효하고(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J을 통해 이 사건 소장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이상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그때부터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 판결이 송달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운, 판사 정영하, 판사 황진희